

# 신규공사장 안전기술지도

[2018.10.01~10.31]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CONTENTS



1. 건설기술진흥법

2. 산업안전보건법

3.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방침 및 지침



# 1. 건설기술진흥법

1.1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1.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1.3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점검 실시시기

1.4 안전관리비

1.5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1.6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7 안전관리조직 및 직무

1.8 안전교육

1.9 설계의 안전성 검토

1.10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존

# 1.1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_시행령98조 [1/3]

-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층 이상 또는 연면적5만㎡ 이상의 건축물</li> <li>-연면적3만㎡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li> <li>-연면적1만㎡ 이상의 지하도 상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층 이상의 공동주택</li> <li>-16층 이상 또는 연면적3만㎡ 이상의 건축물</li> <li>-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역시설</li> <li>-연면적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li> <li>-연면적5천㎡ 이상의 지하도 상가</li> </ul>

-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1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_시행령98조 [2/3]

##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향타 및 향발기

다. 타워크레인

##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등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1.1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_시행령98조 [3/3]

### 안전관리계획 승인절차

-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검토·확인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제출
- 1종·2종 시설물은 시설물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검토
- 심사결과서 발급·보관(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보완)
- 변경 시 동일한 절차 필요

## 1.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_시행령제99조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 **가설공사, 굴착 및 발파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강구조물공사, 성토 및 절토공사, 해체공사, 설비공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참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기]**

## 1.3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점검 실시시기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_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975호

제21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지침' 제22조 참고]
  2. **정기 안전점검** : 별표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지침' 제23조 참고]
- ②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지침' 제24조 참고]
- ③ **초기점검**은 영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한다. ['지침' 제25조 참고]
- ④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은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지침' 제26조 참고]



# 1.3 정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에 따른 별표1]

건설공사 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교 량		가시설공사및기초공사시공시 (콘크리트 타설 전)	하부공사 시공 시	상부공사 시공 시	-	-
터 널		갱구및수직구 굴착등 터널굴착초 기단계 시공시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터널라이닝 콘크리트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	-
댐	콘크리트 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 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시공 시 (이상기초 완료 후)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 단계 시공시
	필 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 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 시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 단계 시공시
하천	수문	가시설공사 완료시 기초및철근콘크리트공사시공전	도메우기및호안공사시공시	-	-	-
	제방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 지반 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 시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사 시 공시	-	-	-
하구 독		배수김문 공사중	제체 공사중	-	-	-
상하 수도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하수처리장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 전)	구조체공사 초기 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 단계 시공 시	-	-
	상수도 관로	총공정의초 중기단계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1.3 정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에 따른 별표1]

건설공사 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항만	계류시설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시공시	제작및거치공사 항타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 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매립공사 시공 시	-
	외곽시설 (갑문, 방파제, 호안)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 시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 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 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시공시	-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 전)	구조체공사 초. 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 시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 중기단계 시공 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 시	-	-	-
폐기물 매립시설		토공사 시공 시	총공정의 중기 단계 시공 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지하차도, 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 시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 시	-	-
도로, 철도, 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옹벽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콘크리트 타설 전)	구조체공사 시공시	-	-	-
	절토사면	비탈면 깎기 완료 후	비탈면 보호공 시공 시	-	-	-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 전)	되메우기 완료 후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 중기단계 시공 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 시	-	-	-

※ [별표1]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 안전점검 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1.4 안전관리비\_시행령 제60조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영 비용
6.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비용: 작성 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2. 제1항제2호의 비용: 영 제100조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3. 제1항제3호의 비용: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4. 제1항제4호의 비용: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의 배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및 인건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5. 제1항제5호의 비용: 영 제99조제1항제2호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6. 제1항제6호의 비용: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공사기간의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④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7.4.>

⑤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_국토교통부고시제2017-797호>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참고

# 1.5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_시행령 제101조의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 대한 평가기준

가.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나.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다. 건설현장의 법적 요건 준수 및 안전관리 체계 운영 실태

라.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마. 건설사고 발생 현황

2.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평가기준

가.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나. 관련 법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실적

다.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라. 건설사고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활동

마. 사후관리 실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 : 건설공사 업무수행 지침\_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97호]

**건설공사 업무수행 지침** 제55조(평가대상 등) ①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평가기관이 총공사비(전기·소방·통신 공사비는 제외하되,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에정금액을 말한다)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다만, 「국유재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채납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공기가 50%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2. 영 제4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등록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현장과 본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한한다)

3.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현장과 본사

## 1.6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시행령 제101조의4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망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정보망의 표준화
4. 정보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7 안전관리조직 및 직무\_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시행령 제102조

제64조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수급인 대표자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
3.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4.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5. 협의체의 운영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7.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자체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8.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휘·감독

③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이행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4.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5.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6.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④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2.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3.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1.8 안전교육\_시행령 제103조

- ① 법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9 설계의 안전성검토\_시행령 제75조

-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10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존\_시행령 제101조

-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에는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출 받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2.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 제1호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의 종합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할 것
-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참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_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기

## 2. 산업안전보건법

- 2.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칙 · 과태료 현황
  - 2.2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교육내용
  - 2.3 안전회의 규정 등
  - 2.4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5 안전관리자의 법적 직무
  - 2.6 안전점검 및 화재 감시자 배치기준
  - 2.7 개인 보호구
  - 2.8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등
- 2.9 건설현장의 위험성 평가 및 법령요지의 게시
  - 2.10 각종 시공계획서 작성
  - 2.1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비치 등
  - 2.12 재해 예방 기술지도
- 2.13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 2.14 서류의 보존
  - 2.15 주요 벌칙



## 2.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칙 · 과태료 현황[1/3]

차트 1

조 항	내 용	과태료	과태료부과 건
합 계	28개 분야	-	2339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	특별교육	500만원 이하	43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1항	건설업기초교육	500만원 이하	332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	물질안전·보건자료개시/비치	500만원 이하	308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 /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1,000만원 이하	254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관리감독자의 직무	500만원 이하	149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안전·보건에 관한교육	500만원 이하	13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7항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교육	300만원 이하	124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직무교육	500만원 이하	72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500만원 이하	68

## 2.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칙 · 과태료 현황[2/3]

차트 2

조 항	내 용	과태료	과태료부과 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산업재해보고	3,000만원 이하	64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건강진단기관 건강검진	1,000만원 이하	60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500만원 이하	50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4항	대상화학물질 양도·제공시 MSDS 제공	300만원 이하	37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1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500만원 이하	34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제1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전 재해예방지도기관 지도	300만원 이하	3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1,000만원 이하	30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제1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500만원 이하	29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제1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절차	500만원 이하	29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 부착	500만원 이하	28

## 2.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칙 · 과태료 현황[3/3]

차트 3

조 항	내 용	과태료	과태료부과 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500만원 이하	27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제1항	법령 요지의 사업장 게시	500만원 이하	26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안전관리자 업무	500만원 이하	25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작업환경측정결과	300만원 이하	23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	산재발생기록보존	300만원 이하	13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5항	MSDS 용기표시(경고 등)	300만원 이하	10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5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500만원 이하	7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안전검사(고용노동부고시검사기준)	1,000만원 이하	5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 제7항	안전 ·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 운영에 관한 특례	500만원 이하	5

## 2.2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 및 교육내용[1/3]

### 2.2.1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 분기 3시간 이상
	건설업종 근로자	매 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시의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 2.2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 및 교육내용[2/3]

### 2.2.2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관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안전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24시간 이상

## 2.2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 및 교육내용[3/3]

### 2.2.3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내용
①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li> <li>○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li> <li>○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li> <li>○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li> </ul>
②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li> <li>○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li> <li>○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li> <li>○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li> <li>○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li> </ul>
③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li> <li>○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li> <li>○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li> <li>○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li> <li>○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li> <li>○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li> </ul>
④.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8의 2 참조</li> </ul>



## 2.3 안전회의의 규정 등[1/2]

### 2.3.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 보건법 제19조)

구분	내용
목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설치대상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에 해당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구성방법 등	<p>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로자대표</li> <li>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li> <li>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li> </ol> <p>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사업의 대표자</li> <li>2. 안전관리자 1명</li> <li>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1명</li> <li>4. 산업보건의 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li> <li>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li> </ol> <p>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li> <li>2.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li> </ol>
회의운영	<p>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p> <p>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p> <p>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최 일시 및 장소</li> <li>2. 출석위원</li> <li>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li> <li>4. 그 밖의 토의사항</li> </ol>

## 2.3 안전회의의 규정 등[2/2]

### 2.3.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2항)

구분	내용
구성	수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운영주기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구성 운영에 관한 특례	<p>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2.3.3 노사협의체 설치대상·구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6조의2」

구분	내용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총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
구성	<p>사용자와 근로자 동수로 구성</p> <p>가. 사용자위원: 해당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공사금액20억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사업의 사업주</p> <p>나. 근로자 위원: 해당사업의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공사금액20억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사업의 근로자대표</p>
운영주기	<p>① 정기회의: 2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여 운영</p> <p>②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여 운영</p>

# 2.4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1/6]

## [1] 계상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적용)

## [2] 계상시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 계상  
 자체사업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계획 수립시 규정에 따라 계상

## [3] 계상방법

- ① 대상액 구분 가능시 : (재료비+직접노무비+지급자재비) × 요율
- ② 대상액 구분 불가시 : 총공사금액 × 0.7 × 요율

## [4] 확인

-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계 공무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발주자 또는 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5]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공사 종류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비율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	197%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000	210%
중 건설공사	343%	235%	5,400,000	244%
철도 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	166%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	127%

공정율	50% 이상 70% 미만	70% 이상 90% 미만	90% 이상
사용기준	50% 이상	70% 이상	90% 이상

## 2.4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2/6]

### [7]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p><b>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b> (제7조제1항제1호 관련)</p>	<p>가.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영 제14조 또는 제18조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선임·신고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법상 의무 선임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신고한 경우, 도급인이 선임하였으나 하도급 업체에서 추가 선임·신고한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 선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p> <p>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가)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다)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 공사현장 진·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등</p> <p>다. 안전·보건보조원의 인건비            1) 전담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의 경우      2) 보조원이 안전·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3)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등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하거나 사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의 사무를 보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건비</p>

## 2.4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3/6]

## [7]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목	사용 불가내역
<p><b>2. 안전시설비 등</b> (제7조제1항제2호 관련)</p>	<p>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내·주의·경고 표지 등과 공사 수행 도구·시설이 안전장치와 일체형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구입·수리 및 설치·해체 비용 등</p> <p>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p> <p>1)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2)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통로, 사다리 등</p> <p>※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p> <p>- 다만,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 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p> <p>3)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4) 작업장 간 상호 연락, 작업 상황 파악 등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통신시설·설비</p> <p>5)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법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p> <p>나. 소음·환경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p> <p>1) 건설현장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 분진망 등 먼지·분진 비산 방지시설 등</p> <p>2) 도로 확·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주의·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p> <p>※ 공사안내·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웬스, P드럼 등</p> <p>다. 기계·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의 구입비용</p> <p>※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은 사용 가능.</p> <p>1)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p> <p>※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된 목재가공용 등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 플러그와 접지 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된 접지형플러그 등</p> <p>2) 공사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p> <p>라.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p>

## 2.4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4/6]

### [7]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p><b>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b> (제7조제1항제3호 관련)</p>	<p>근로자 재해나 건강장애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후생적 근무여건 개선·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p> <p>가.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p> <p>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p> <p>1)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p> <p>2)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보온장구(핫팩, 장갑,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한다) 구입비</p> <p>※ 다만, <b>혹한·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애는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사용 가능함</b></p> <p>3)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p>
<p><b>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b> (제7조제1항제4호 관련)</p>	<p>다른 법 적용사항이거나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p> <p>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정기·구조변경·수시·확인검사 등</p> <p>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등</p> <p>다. 「환경법」에 따른 외부 환경 소음 및 분진 측정 등</p> <p>라. 민원 처리 목적의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소요비용</p> <p>마.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 등 공사 수행 또는 건축물 등의 안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p> <p>바.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진단비용</p> <p>사. 안전순찰차량(자전거, 오토바이를 포함한다) 구입·임차 비용</p> <p>※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또한 사용할 수 없음</p>

## 2.4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5/6]

### [7]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p><b>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b> (제7조제1항제5호 관련)</p>	<p>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와 무관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p> <p>가. 당해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해체·운영비용</p> <p>나.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p> <p>다.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화기, 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p> <p>라.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li> <li>2)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li> <li>3)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li> <li>4)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자,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li> </ol> <p>마. 근로자 재해예방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전정보교류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문(안전관련 신문 등 전문지를 포함한다) 구독 비용</li> <li>2) 안전관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용</li> <li>3)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의 참가회비가 적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li> </ol> <p>바.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 행사비, 안전기원제 행사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li> <li>2)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지급되는 의식 행사비(기도비용 등을 말한다)</li> <li>3) 준공식 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없는 행사</li> <li>4) 산업안전보건교육 고취와 무관한 회식비</li> </ol> <p>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교육비용</p>

## 2.4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6/6]

### [7]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 목	사용 불가내역
<p><b>6. 근로자의건강관리비 등</b> (제7조제1항제6호 관련)</p>	<p>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복리후생 등 목적의 시설·기구·약품 등  1) 간식·중식 등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샤워시설  ※ 분진·유해물질사용·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제빙기, 자외선차단용 쉼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용은 사용 가능  3) 흡서·흡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보약 구입비용  ※ 작업 중 흡한·흡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해체·유지비용은 사용 가능  4)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운동 기구 등  5)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 등  나. 건설업과 관련 없는 파상풍, 독감 등의 예방접종 및 약품(신종플루 예방접종 비용을 포함한다)  다. 기숙사 또는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시설 설치·해체·유지비, 기숙사 방역 및 소독·방충비용  라.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 비용 등</p>
<p><b>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b></p>	<p>-</p>
<p><b>8. 본사 사용비</b> (제7조제1항제6호 관련)</p>	<p>가. 본사에 제7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나. 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안전보건관리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p>



## 2.5 안전관리자의 법적 직무[1/5]

구분	관련 내용
<b>안전보건관리 책임자</b>	<p>- 대상 및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총공사금액이 20억원 (관급 재료비 포함) 이상인 건설업</li> <li>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현장내 서류 보존</li> </ul>
	<p>- 자격 : 당해 현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p>
	<p>- 직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li>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li> <li>③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li> <li>④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li> <li>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li> <li>⑥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li>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li> <li>⑧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확인에 사항</li> <li>⑨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li> </ul>

## 2.5 안전관리자의 법적 직무[2/5]

구분	관련 내용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p>- 대상 및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총공사금액이 20억원 (관급 재료비 포함) 이상인 건설업</li> <li>②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li> </ul>
	<p>- 자격 : 당해 사업의 원 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p>
	<p>- 직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작업의 중지 및 재개</li> <li>②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보건조치</li> <li>③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 간의 협의. 조정</li> <li>④ 위험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의 확인</li> </ul>

## 2.5 안전관리자의 법적 직무[3/5]

구 분	관련 내용
<b>안전관리자</b> [시행령12조]	<b>-대상 및 선임</b> ① 총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600인 이상 : <b>2인 이상</b> ② 총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이상 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b>1인 이상</b> ③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으로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개정:2016.10.27] : <b>1인 이상</b> ③ 총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70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기준으로 매300인 추가시마다 : <b>1인씩 추가</b> ④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노동사무소에 보고
	<b>-자격</b> ① 산업안전지도사 ②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기사 및 기사 ③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자 ④ 산업안전 관련학과 졸업자 ⑤ 일반건설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
	<b>-직무</b>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② 방호장치, 기계, 기구 및 설비,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③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④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⑤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 조언 ⑤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를 위한 지도 조언 ⑥ 법, 명령,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사항 위반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⑦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2.5 안전관리자의 법적 직무[4/5]

구 분	관 련 내 용
관리감독자	<p>- <b>자격</b>: 당해 사업장의 경영조직에서 <b>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b></p> <p>- <b>직무</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li> <li>② 근로자 작업복·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li> <li>③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li> <li>④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li> <li>⑤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li> <li>⑤ 건설업의 경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시 아래의 업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시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li> <li>→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li> </ul> </li> <li>⑥ 기타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li> </ol> <p>- <b>지원</b>: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 2.5 안전관리자의 법적 직무[5/5]

구분	관련내용
<p><b>안전보건조정자</b>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2] [본조신설 2017.4.18.]</p>	<p><b>-대상</b></p> <p>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공사,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그 밖의 <b>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자</b>는 그 각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그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b>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분리 발주하여야 하는 전기공사</li> <li>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공사</li> </ol> <p>②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와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선임 등</b></p> <p>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발주자는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li> <li>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li> <li>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li> <li>다.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li> <li>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li> <li>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li> </ol> </li> <li>3.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li> <li>4.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li> <li>5. 「국가기술훈위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li> <li>6. 「국가기술훈위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7. 「국가기술훈위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ol>

## 2.6 안전점검 및 화재 감시자 배치기준[1/2]

### 2.6.1 사업자 순회점검

사업주는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위험장소는 다음과 같다.

- ① 토사·건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 ②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 ③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 ④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 ⑤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 ⑥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 ⑦ 엘리베이터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⑧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 ⑨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나.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다.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⑩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 ⑪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 ⑫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 ⑬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 ⑭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 ⑮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⑯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 2.6.2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실시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가. 도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나. 수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다.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 2.6 안전점검 및 화재 감시자 배치기준[1/2]

### 화재감시자 배치기준[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2.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3.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3.]

## 2.7 개인 보호구

### 2.7.1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에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 2.7.2 개인보호구의 지급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그 지급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벌칙]

- 1) 보호구 미 착용시 **근로자에 과태료 부과 : 5만원**
- 2) 보호구 미 지급시 **사업주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2.8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등

## 2.8.1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구 분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
안전인증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剪斷機)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차. 기계톱(이동식만 해당한다)

구 분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
안전인증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가. 응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8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등

## 2.8.2 안전검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법규 및 해당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는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내 용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b>제 36조(안전검사)</b> 제 36조의 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제 36조의 3(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구 분	안전검사 대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 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hoist)는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1.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2.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검사 주기	1.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그 밖의 유해·위험기계 등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 2.9 건설현장의 위험성평가 및 법령요지의 게시

### 2.9.1 건설현장의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41조의 2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실시 내용에 따라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11 관련사항]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제2017호]

① 사업주가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2.9.2 법령요지의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 법령 요지의 게시 :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정리하여 상시 각 작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 2.10 각종 시공계획서 작성

### 2.10.1 각종 계획서 작성

사업주는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2.10.2 건설부분 주요 계획서 작성

-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② 차량계하역운반기계작업계획
- ③ 차량계 건설기계작업계획
- ④ 중량물 취급계획
- ⑤ 굴착작업계획
- ⑥ 터널굴착작업계획
- ⑦ 교량작업계획
- ⑧ 채석작업계획
- ⑨ 건물 등의 해체작업계획
- ⑩ 궤도와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점검작업

## 2.1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비치 등[제41조][1/2]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중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                         |
|----------------------|-------------------------|
| 1. 대상화학물질의 명         | 1의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 2. 안전 ·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3.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
|                      |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③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은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2.1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비치 등[제41조][2/2]

- ⑤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방법 ·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⑦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 · 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⑨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 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⑪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상화학물질을 양도 · 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2.12 재해 예방 기술지도

-**법적근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 등]제6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별표6의5]

★ 착공신고를 할 때에는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대상인 경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2016.5.30.신설]

### -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총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 - 기술지도 예외 사업장

1.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영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3(2)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시행규칙제32조의3 관련)

- 가. 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급인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 나. 발주자는 수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늦게 체결하여 기술지도의 대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 -기술지도 횟수

- 가. 월 1회 실시하되, 총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분야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가 4회마다 한 번 이상 현장에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 나.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과태료 : 위반시 300만원 이하

## 2.13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1/4]

### 2.13.1 적용대상 사업장[법 제24조제1항제5호]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흠(fume) · 미스트(mist) · 산소 결핍 ·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 · 유해광선 · 고온 · 저온 · 초음파 · 소음 · 진동 · 이상 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 · 채광 · 조명 · 보온 · 방습 ·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산안법제3조]**

### 2.13.2 조사시기

1. 신설사업장 : 1년 이내 **[건설업]**
2. 정기조사 : 근골격계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 시킬때
3. 즉시조사 : 질환자 발생,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 작업환경 변경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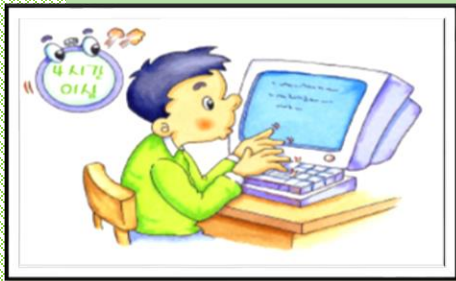
### 2.13.3 벌칙 및 과태료

1.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근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13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2/4]

## 2.13.4 근골격계 부담작업[11개] 이란?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및유해요인조사방법에관한고시[고용부고시제2018-1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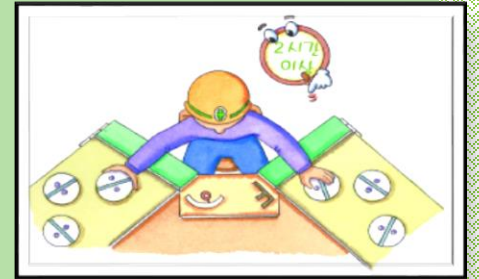


제1호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제2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제3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제4호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제5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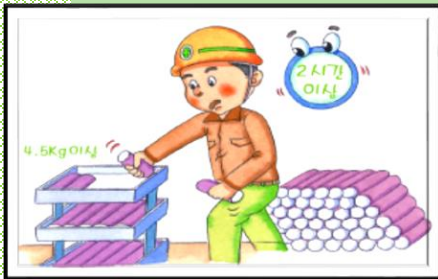
제6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2.13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3/4]

## 2.13.4 근골격계 부담작업[11개] 이란?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및유해요인조사방법에관한고시[고용부고시제2018-1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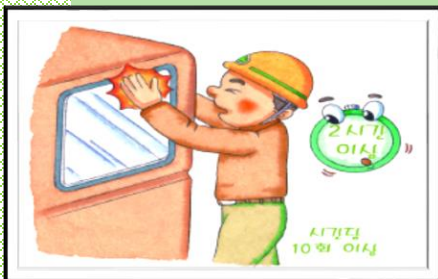
제7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제9호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제11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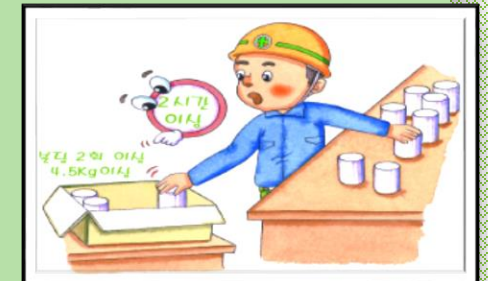
제8호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제10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이견사항 처리방법

작업부담작업의 여부 등에 대하여 노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판단을 요청한다.

## 2.13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4/4]

## 2.13.5 근골격계 부담작업 평가표[사례]

사업장명		조사 일자						조사 자				
공정명		공정 내용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노출시간	하루에 총 4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노출빈도	-							하루에 총 10회 이상	하루에 총 25회 이상	하루에 총 2회 이상	하루에 총 10회 이상	
신체부위	손, 손가락, 목, 어깨	목, 어깨, 손목, 손, 팔꿈치	어깨, 팔	목, 허리	다리, 무릎, 허리	손가락	손	허리	팔, 어깨, 허리	허리	손, 무릎	
작업자세 및 내용	집중적인 자료 입력 작업 (마우스, 키보드 사용)	같은 동작 반복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머리 위에 손</li> <li>팔꿈치가 몸통으로부터 돌출</li> <li>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li> </ul>	구부러거나 비틀 (지지되지 않은 상태, 자세변경 불가)	또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	한 손가락 집어 옮기거나 쥐는 작업 (지지되지 않은 상태)	물건을 한손으로 옮기거나 잡는 작업	물건을 드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깨 위에서 옮기</li> <li>팔을 벌린 상태에서 물건을 드는 작업</li> </ul>	물건을 드는 작업	반복적인 충격	
무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kg이상의 물건 옮기</li> <li>2kg이상의 상 중하는 힘으로 옮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5kg 이상의 물건 옮기</li> <li>동일한 힘으로 옮기</li> </ul>	25kg 이상	10kg 이상	4.5kg 이상	-	
단위작업명	(영)											
	(영)											
	(영)											
	(영)											
	(영)											

# 2.13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4/4]

## 2.13.5 근골격계 부담작업 평가표[사례]

###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1. 아래 사항을 적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에 √ 하시고,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성명		연령	만 _____세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현 직장경력	_____년 _____개월째 근무 중
작업공종	협력사명(_____), _____공종 _____작업(수행작업)	결혼여부	<input type="checkbox"/> 기혼 <input type="checkbox"/> 미혼
현재하고 있는 작업(구체적으로)	작업 내용 : _____ 작업 기간 : _____년 _____개월째 하고 있음		
1일 근무시간	_____시간 근무 중 휴식시간(식사시간 제외) _____분씩 _____회 휴식		
현작업을 하기 전에 했던 작업	작업 내용 : _____ 작업 기간 : _____년 _____개월 동안 했음		

- 규칙적인(한번에 30분 이상, 1주일에 적어도 2-3회 이상) 여가 및 취미활동을 하고 계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컴퓨터 관련활동     악기연주(피아노, 바이올린 등)     뜨개질 자수, 붓글씨  
 테니스/배드민턴/스쿼시     축구/족구/농구/스키     해당사항 없음
- 귀하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2살 미만의 아이 돌보기 등)은 얼마나 됩니까?  
 거의 하지 않는다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귀하는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병에 대해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해당 질병에 체크)  
 (보기 :  류머티스 관절염     당뇨병     루프스병     통풍     알코올중독)  
 아니오     예('예'인 경우 현재상태는?     완치     치료나 관찰 중)
- 과거에 운동 중 혹은 사고로(교통사고, 넘어짐, 추락 등) 인해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부위를 다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예  
 ('예'인 경우 상해 부위는?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의 육체적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힘들지 않음     견딜만 함     약간 힘들     매우 힘들

2. 지난 1년 동안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허리, 다리/발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귀하의 작업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함(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 찌릿함 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수고하셨습니다. 설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예("예"라고 답하신 분은 아래 표의 통증부위에 체크(√)하고, 해당 통증부위의 세로줄로 내려가며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통증 부위	목( )	어깨( )	팔/팔꿈치( )	손/손목/손가락( )	허리( )	다리/발( )
1. 통증의 구체적 부위는?	<input type="checkbox"/> 오른쪽 <input type="checkbox"/> 왼쪽 <input type="checkbox"/> 양쪽 모두	<input type="checkbox"/> 오른쪽 <input type="checkbox"/> 왼쪽 <input type="checkbox"/> 양쪽 모두	<input type="checkbox"/> 오른쪽 <input type="checkbox"/> 왼쪽 <input type="checkbox"/> 양쪽 모두	<input type="checkbox"/> 오른쪽 <input type="checkbox"/> 왼쪽 <input type="checkbox"/> 양쪽 모두	<input type="checkbox"/> 오른쪽 <input type="checkbox"/> 왼쪽 <input type="checkbox"/> 양쪽 모두	<input type="checkbox"/> 오른쪽 <input type="checkbox"/> 왼쪽 <input type="checkbox"/> 양쪽 모두
2.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통증 기간은 얼마 지속됩니까?	1일 미만 <input type="checkbox"/> 1일 - 1주일 미만 <input type="checkbox"/> 1주일 - 1달 미만 <input type="checkbox"/> 1달 - 6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1일 미만 <input type="checkbox"/> 1일 - 1주일 미만 <input type="checkbox"/> 1주일 - 1달 미만 <input type="checkbox"/> 1달 - 6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1일 미만 <input type="checkbox"/> 1일 - 1주일 미만 <input type="checkbox"/> 1주일 - 1달 미만 <input type="checkbox"/> 1달 - 6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1일 미만 <input type="checkbox"/> 1일 - 1주일 미만 <input type="checkbox"/> 1주일 - 1달 미만 <input type="checkbox"/> 1달 - 6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1일 미만 <input type="checkbox"/> 1일 - 1주일 미만 <input type="checkbox"/> 1주일 - 1달 미만 <input type="checkbox"/> 1달 - 6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1일 미만 <input type="checkbox"/> 1일 - 1주일 미만 <input type="checkbox"/> 1주일 - 1달 미만 <input type="checkbox"/> 1달 - 6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3. 그때의 아픈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보기 참조)	<input type="checkbox"/> 약간 통증 <input type="checkbox"/> 중간 통증 <input type="checkbox"/> 심한 통증 <input type="checkbox"/> 매우 심한 통증	<input type="checkbox"/> 약간 통증 <input type="checkbox"/> 중간 통증 <input type="checkbox"/> 심한 통증 <input type="checkbox"/> 매우 심한 통증	<input type="checkbox"/> 약간 통증 <input type="checkbox"/> 중간 통증 <input type="checkbox"/> 심한 통증 <input type="checkbox"/> 매우 심한 통증	<input type="checkbox"/> 약간 통증 <input type="checkbox"/> 중간 통증 <input type="checkbox"/> 심한 통증 <input type="checkbox"/> 매우 심한 통증	<input type="checkbox"/> 약간 통증 <input type="checkbox"/> 중간 통증 <input type="checkbox"/> 심한 통증 <input type="checkbox"/> 매우 심한 통증	<input type="checkbox"/> 약간 통증 <input type="checkbox"/> 중간 통증 <input type="checkbox"/> 심한 통증 <input type="checkbox"/> 매우 심한 통증
4.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6개월에 1번 <input type="checkbox"/> 2-3달에 1번 <input type="checkbox"/> 1달에 1번 <input type="checkbox"/> 1주일에 1번 <input type="checkbox"/> 매일	<input type="checkbox"/> 6개월에 1번 <input type="checkbox"/> 2-3달에 1번 <input type="checkbox"/> 1달에 1번 <input type="checkbox"/> 1주일에 1번 <input type="checkbox"/> 매일	<input type="checkbox"/> 6개월에 1번 <input type="checkbox"/> 2-3달에 1번 <input type="checkbox"/> 1달에 1번 <input type="checkbox"/> 1주일에 1번 <input type="checkbox"/> 매일	<input type="checkbox"/> 6개월에 1번 <input type="checkbox"/> 2-3달에 1번 <input type="checkbox"/> 1달에 1번 <input type="checkbox"/> 1주일에 1번 <input type="checkbox"/> 매일	<input type="checkbox"/> 6개월에 1번 <input type="checkbox"/> 2-3달에 1번 <input type="checkbox"/> 1달에 1번 <input type="checkbox"/> 1주일에 1번 <input type="checkbox"/> 매일	<input type="checkbox"/> 6개월에 1번 <input type="checkbox"/> 2-3달에 1번 <input type="checkbox"/> 1달에 1번 <input type="checkbox"/> 1주일에 1번 <input type="checkbox"/> 매일
5. 지난 1주일 동안에도 이러한 증상이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6.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병원·한의원 치료 <input type="checkbox"/> 약국치료 <input type="checkbox"/> 병가, 산재 <input type="checkbox"/> 직업 전환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기타( )	<input type="checkbox"/> 병원·한의원 치료 <input type="checkbox"/> 약국치료 <input type="checkbox"/> 병가, 산재 <input type="checkbox"/> 직업 전환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기타( )	<input type="checkbox"/> 병원·한의원 치료 <input type="checkbox"/> 약국치료 <input type="checkbox"/> 병가, 산재 <input type="checkbox"/> 직업 전환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기타( )	<input type="checkbox"/> 병원·한의원 치료 <input type="checkbox"/> 약국치료 <input type="checkbox"/> 병가, 산재 <input type="checkbox"/> 직업 전환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기타( )	<input type="checkbox"/> 병원·한의원 치료 <input type="checkbox"/> 약국치료 <input type="checkbox"/> 병가, 산재 <input type="checkbox"/> 직업 전환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기타( )	<input type="checkbox"/> 병원·한의원 치료 <input type="checkbox"/> 약국치료 <input type="checkbox"/> 병가, 산재 <input type="checkbox"/> 직업 전환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2.14 서류의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에 의해 각종 안전관리서류는 보존 기간에 따라 서류를 보관하여야한다

보존 기한	서 식 내 용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li> <li>- 건강진단 결과표,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li> <li>-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 계획서</li> <li>- 보호구관련 기록</li> <li>- 작업계획서</li> </ul>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발생기록</li> <li>- 위험성평가 기록</li> <li>- 관리(총괄)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익에 선임에 관한 서류</li> <li>- 관리감독자의 직무 서류 및 활동 사항</li> <li>- 안전보건관리위탁 관련 서류</li> <li>- 석면조사결과에 관한 서류</li> <li>-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li> <li>- 물질안전보건자료</li> </ul>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및 협의체 회의록</li> <li>- 작업장순회 점검일자</li> <li>- 안전보건관련 교육</li> <li>- 안전인증</li> <li>- 안전검사</li> </ul>
공통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2.15 주요 벌칙 [1/3]

**벌칙** : 법2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이르게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 제23조 사업주의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벌칙** : 법24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이르게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 제24조 사업주의 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흠(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2.15 주요 벌칙 [2/3]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 제67조 벌칙

1. 제23조[안전조치]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24조[보건조치]제1항, 제26조[작업중지]제1항,  
제28조[유해작업도급금지]제1항, 제37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제1항, 제38조[제조 등의 허가]제1항,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 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제1항 또는 제52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조 등의 허가] 제5항,  
제48조[유해·위험방지구획서 제출 등]제4항 또는  
제51조[감독상의조치]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 제67조의2 벌칙

1.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제3항,  
제34조[안전인증]제2항, 제34조의4[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제1항, 제38조[제조 등의  
허가]제3항, 제38조의3[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제46조[근로시간연장의 제한],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제1항 또는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2. 제34조의4[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제2항, 제38조[제조 등의 허가] 제4항,  
제38조의2[석면조사]제4항, 제43조[건강진단]제2항,  
제49조의2[안전·보건진단]제3항·제10항 또는  
제51조[감독상의조치]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2.15 주요 벌칙 [3/3]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 제68조 벌칙

1. 제10조[산업재해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등]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하거나 공모한 자
2. 제26조[작업중지 등]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3.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제1항·제2항,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제2항·제3항, 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제1항, 제52조의6[비밀유지] 또는 제63조[비밀유지]를 위반한 자
4.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제4항 또는 제35조의4[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 제69조 벌칙

1.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제8항, 제35조[자율안전확인인 신고]제1항,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인 표시 등]제2항·제3항, 제40조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2항·제7항, 제43조[건강진단]제5항 또는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인 표시 등]제4항 또는 제40조[화학물질의 유해성 유해성·위험성 조사]제4항·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기쁨이 가득합니다.